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광 주 고 등 법 원

전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전주)2018누11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55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8.
판 결 선 고	2018. 6.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 9. 원고 A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세부과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재산세부과처분을, 원고 C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다만 위 목록 나.항 "[redacted]동 [redacted]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redacted]동 [redacted]호"로 정정한다) 재산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08. 10. 14."를 "2008. 10. 13."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개·보수공사비, 소방시설공사비 등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령 E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따라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유세의 납부의무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임이 밝혀져 원인무효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원고들은 위 판결 확정 전이나 그 후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고, E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으로서 사실상 소유자와 같은 권능을 행사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여전히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E이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사용·수익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의 사용자는 그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고, 이와 달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재산의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안영화

판사 양시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별지 1(원고 [redacted])

가. 과세대상 : 토지([redacted]시 [redacted] [redacted]동 [redacted] 면적 327.3㎡)

부과년도	세목			비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2	326,390	38,400	364,790	
2013	334,960	39,410	374,370	
2014	331,530	39,010	370,540	
2015	326,860	38,450	365,310	
2016	334,970	39,410	374,380	
소계	1654710	194,680	1,849,390	

나. 과세대상 : 건축물([redacted]시 [redacted] [redacted]동 [redacted]호)

부과년도	세목				비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2	2,214,210	1,357,150	283,870	3,855,230	
2013	2,194,310	1,344,640	281,320	3,820,270	
2014	2,266,900	1,389,290	290,620	3,946,810	
2015	2,186,170	1,339,730	280,270	3,806,170	
2016	2,162,090	1,325,050	277,190	3,764,330	
소계	11,023,680	6,755,860	1,413,270	19,192,8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별지 2(원고 [redacted])

가. 과세대상 : 토지([redacted]시 [redacted] [redacted]동 [redacted]호(면적 602.9㎡)

부과년도	세목			비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2	619,170	72,840	692,010	
2013	635,420	74,750	710,170	
2014	628,920	73,990	702,910	
2015	620,060	72,940	693,000	
2016	635,580	74,770	710,350	
소계	3,139,150	369,290	3,508,440	

나. 과세대상 : 건축물([redacted]시 [redacted] [redacted]동 [redacted]호)

부과년도	세목				비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2	4,201,190	2,575,030	538,610	7,314,830	
2013	4,163,440	2,551,300	533,770	7,248,510	
2014	4,301,180	2,636,000	551,430	7,488,610	
2015	4,148,000	2,541,970	531,790	7,221,760	
2016	4,102,310	2,514,130	525,930	7,142,370	
소계	20,916,120	12,818,430	2,681,530	36,416,0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별지 3(원고 [])

가. 과세대상 : 토지([]시 []동 []호(면적 275.1㎡)

부과년도	세목			비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2	274,330	32,270	306,600	
2013	281,530	33,120	314,650	
2014	278,650	32,780	311,430	
2015	274,720	32,320	307,040	
2016	281,580	33,120	314,700	
소계	1,390,810	163,610	1,554,420	

나. 과세대상 : 건축물([]시 []동 []호)

부과년도	세목				비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2	1,861,260	1,140,820	238,620	3,240,700	
2013	1,844,530	1,130,300	236,470	3,211,300	
2014	1,905,550	1,167,830	244,300	3,317,680	
2015	1,837,690	1,126,170	235,600	3,199,460	
2016	1,817,440	1,113,830	233,000	3,164,270	
소계	9,266,470	5,678,950	1,187,990	16,133,410	